

청주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446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4468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9. 18 선고 2015가단2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16. 3. 2.

판결 선고 2016. 3. 2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 9. 18. 선고 2015가단2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H 하천 1,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약 14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F이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원고를 상대로 위 법정지상권의 확인을 구한 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1498호)에서 패소하여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설일영

판사강경묵

별지